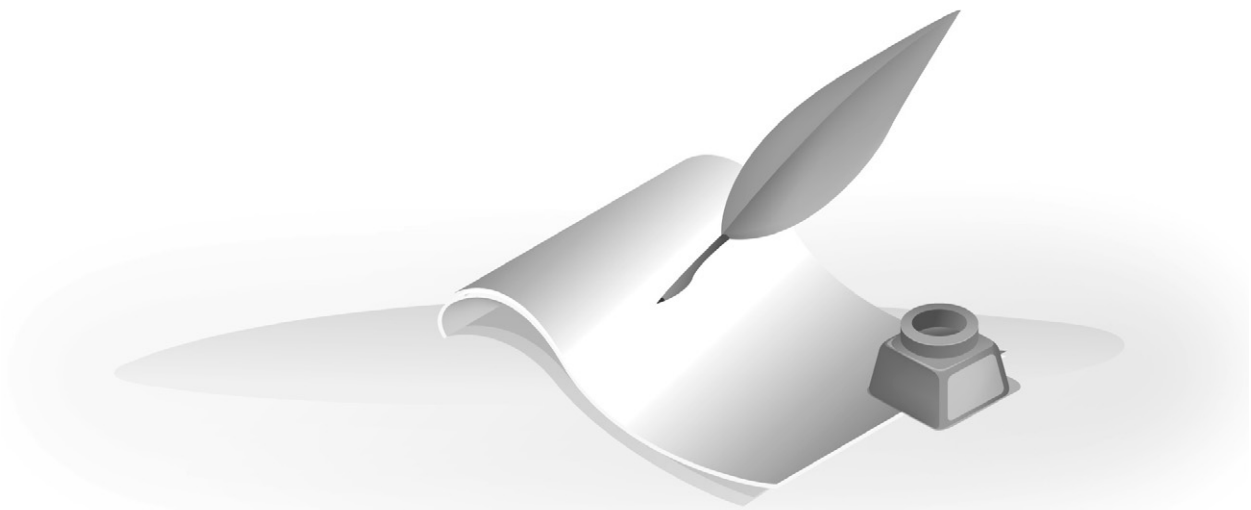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업 시행령은 ▲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정시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업 시행규칙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업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편집자 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 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정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정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그 조정사유 등에 대한 통보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4조의4)

또한 원도급자의 공사금액이 조정된 근거(물가상승률, 조정계수 등)를 하도급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문서 또는 전산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②(생략) 〈신설〉	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5억원 미만의 소액 공사의 경우 1인의 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3곳(중전 2곳)으로 확대했다.

다만 발주자 보호 차원에서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다.(제35조제3항)

또한 기능사로 현장기술자 배치를 대체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1억원(중전 3천만원)으로 확대(별표5)했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②(생략)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②(생략) ③ ----- 각호의 어느 하나 ----- 공사업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 3개 -----.

▲현장기술자 배치 대체 공사범위

개정 전	개정 후
별표5. 비고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5. 비고6 ----- -----1억원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9. 7. 1)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법제35조제3항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의 경우는 2009.7.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 도급계약체결 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를 직접 고용함에 따라 4대 보험료 등 납부의무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계약 시 4대 보험료가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등 관련 서식에 관련내용을 명시토록 했다.(별지 제17호, 제17호의 2, 제23호 서식)

2. 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건설업 양도 시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구역 안에서 발행하는 1개(중전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건설업 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09. 4. 1)☺



무한지식

두통은 왜 생기나?

천하를 호령하고 넘치는 매력으로 못 여성을 사로잡았던 신들의 왕 제우스도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었다. 바로 두통이다. 어느 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차라리 자신의 머리를 쪼개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해서 쪼개진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것이 지혜와 정의의 여신인 아테나이다.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곰씹어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혜와 정의는 종종 지끈지끈한 두통을 동반한다는 것 말이다.

제우스는 좀 다른 경우지만 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대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두통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두통에 시달리는 여성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 있다. 미국의 의학 저널인 『신경학(Neurology)』에 따르면,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여성 1,032명을 조사해 보니 소득이 낮을수록 두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1년 가계소득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여성들이었다. 아무래도 살림이 빠듯하다 보니 걱정이 많고,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다보니 몸과 마음의 고단함이 두통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다. 머리가 아픈 원인은 이렇듯 심각한 세상살이 고민의 결과일 때가 많지만 가끔은 예외도 있

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스크림 두통’이라 불리는 것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을 띤 음료수를 먹으면 머리가 지끈대는 걸 느꼈을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직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차가운 걸 먹었을 때 극심한 두통이 나타날 확률은 8% 정도라고 한다. 그에 비해 평소 편두통 증세가 있는 사람이 차가운 걸 먹었을 때는 육신거리는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70%였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관찰한 결과이지만 해결책은 좀 싱겁다.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픈 사람은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런가 하면 최근들어 여성들의 가방이 지나치게 커진 탓에 두통이 생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만성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들의 가방 무게를 조사했더니 대개 3.1kg~4.5kg이나 나가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을 좇아 큰 가방을 선호하고 이것저것 자꾸 넣다보니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두통 때문에 특하면 머리를 싸매는 여성이라면 우선 자신의 가방부터 살펴보길 바란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는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해 줄 것을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건의하였다. 그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가 개정되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내용 및 신·구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주요개정 내용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부칙 제5조)

- 2007. 9. 20 이전 입찰공고 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신·구조문 대비표

부칙 제5조

현 행	개정안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단서신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다만, 제7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계약체결일 및 입찰일로 보고, 2007년 9월 20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20일을 입찰일로 본다.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 마련(제73조제7항)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⑥(생략) <신설>	제7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⑥(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및 직접지급제도 도입(제4장 IV. 4. 아 내지 자, 5호 신설)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IV. 대가의 지급 1. ~3 (현행과 같음) 4.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IV. 대가의 지급 1. ~3 (현행과 같음) 4.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 가. ~사 (현행과 같음) 아.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 (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서류 5.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및 직접지급 등
(신설)	가.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4호-아목에 의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신설)	나.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나 항목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제4장 III. 2. 가. 2). 가) 개정)

-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20%(중전) ⇒ 30%(개정)

-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30%(중전) ⇒ 40%(개정)

- 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동일)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2009년 적용 노동부 고시



1.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사업종류 예시 포함) : 별첨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 [별첨]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기구제조업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설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사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장 고 업	18
인쇄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1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2.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3.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4.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 광업	1,703,000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 건설업	3,332,820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0,000
K. 금융 및 보험업	2,008,0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5. 2009년도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 2008 - 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무한지식

중요한 선택 전엔 한 박자 쉬고

고무장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색깔은 뭐니뭐니해도 빨간 색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른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고무 장갑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에 따르면, 현재 생산되는 고무 장갑은 분홍색이 67%, 빨간색이 28%, 상아색이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업체도 고무장갑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100% 빨간 색만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하필 빨간색이었을까? 우리나라는 요리를 할 때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벌건 물이 들어도 표가 나지 않는 빨간색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빨간 고무장갑 색깔이 무척 다양해졌는데, 그 때문에 소비자들은 고무장갑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무슨 색깔로 살까 하고 말이다.

최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팀이 선택의 기로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고무장갑을 고를 때는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자동차를 고를 때는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자동차를 고를 때는 적당한 선에서 고민을 끝내고 잠시 머리를 식히라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엔 그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일까?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몇 가지 종류의 가상의 자동차를 설정한 다음, 학생들에게 그 차들에 대한 간

단한 정보를 네 가지씩 제공했다. 네 가지 정보란 연비나 내부 공간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그 정보를 읽고 나서 4분 동안 고민한 다음 가장 좋은 차를 골라보라고 하자, 대부분 가장 좋게 설정된 차를 선택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열두 가지나 주고 제일 좋은 차를 선택하게 했다. 그러자 관찮은 차를 골라낸 비율이 25%에 그쳤다.

끝으로 또 다른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열두 가지 정보를 주되, 선택의 순간 몇 분전에 간단한 퍼즐게임을 하고 나서 차를 고르게 했다. 그랬더니 제일 좋은 차를 골라낸 비율이 60%로 올라갔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바로 두뇌활동의 특징 때문이다. 두뇌가 관찮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의 양이 많을 때는 그것을 정리하고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어떤 색깔로 사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는 끝까지 고민해도 좋지만, 자동차처럼 고려해야 할 정보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생각의 '휴지기'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코앞에 닥친 일에서 잠시 눈길을 돌릴 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자동차를 살 때만은 아닐 것이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